

학술지 『미래사회』

연구윤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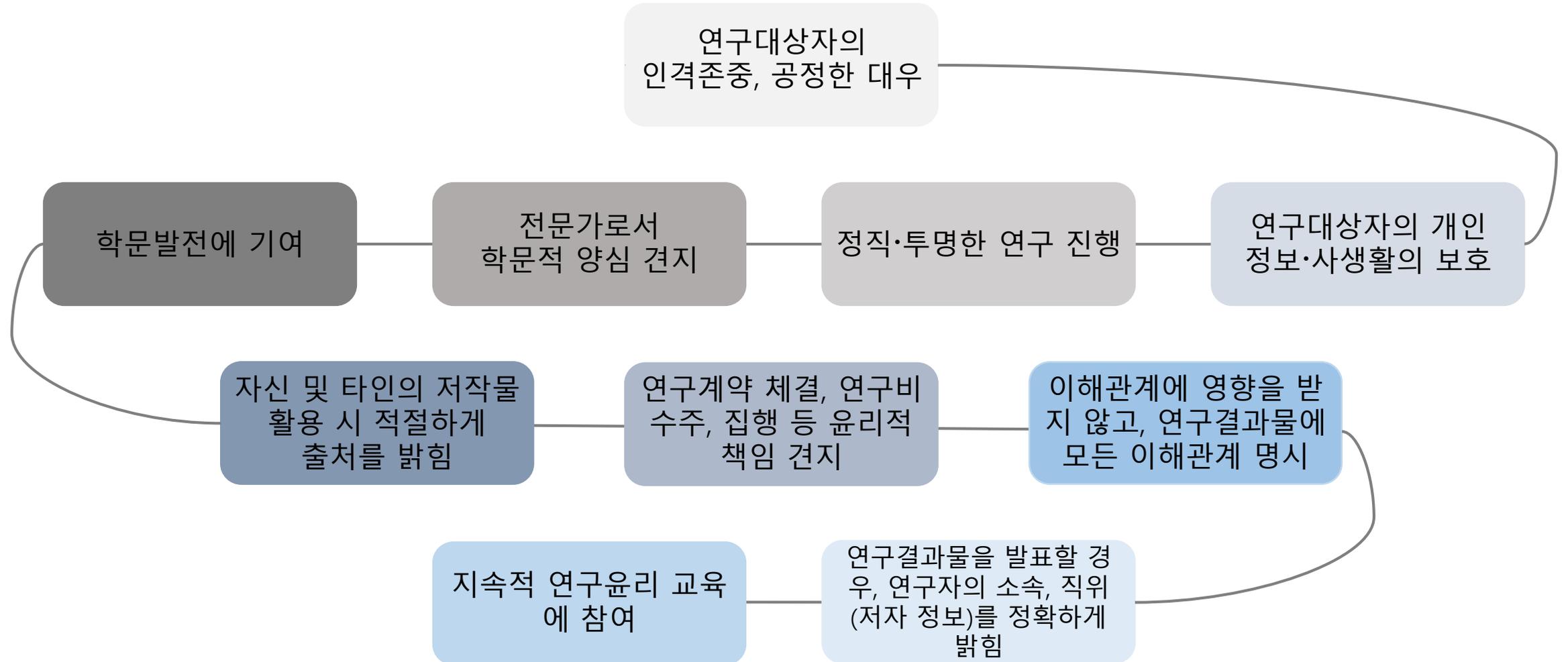
CONTENTS

- I. 연구윤리 개관
- II. 연구윤리 규정의 구성
- III. 총칙
- IV. 연구윤리 위반행위
- V.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VI. 연구윤리 위반 제재

I. 연구윤리 개관

연구윤리 정의 :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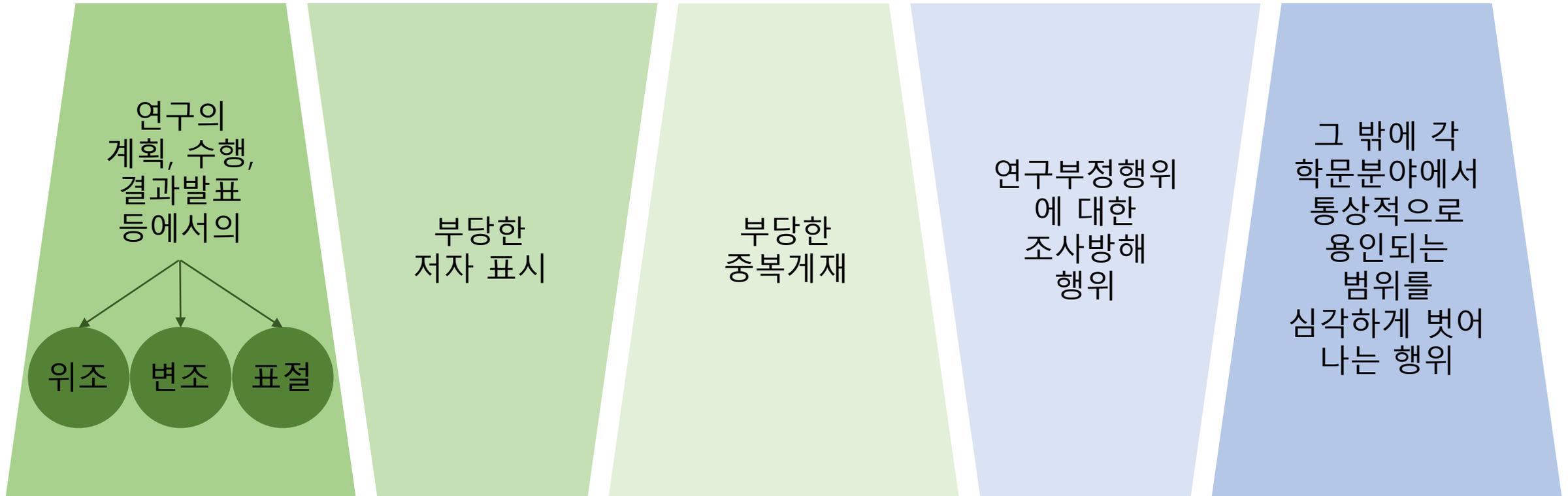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속임수, 기만행위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범위



연구윤리 법률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장[대통령령 제31297호, 2020.12.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1.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지침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구체적 준수사항 등 연구기관, 연구윤리 전문가 등에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 건전한 학술연구 풍토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가이드라인 지원 결과물 적극 활용 권장

연구윤리정보포털 내 가이드라인

The screenshot shows the '연구윤리정보포털' (Research Ethics Information Portal)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연구윤리 정보' (Research Ethics Information) and '연구윤리 활동지원' (Research Ethics Activity Support). The '연구윤리 활동지원' section is highlighted, and a sub-menu shows '가이드라인' (Guidelines) as the selected item.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search bar and a list of activity support items including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검증 지원', '교육', '실태조사', and '포럼'. A search box at the bottom contains the text '제목' (Title) and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Enter keywords).

총:13건 Page 1/2

No	제목	조회	날짜
13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강령과 세부 지침	32	2021-09-06
12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차 개정판, 202	191	2021-08-12
11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활용 관련 권고사항 안내	60	2021-08-12
10	[2018]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40	2021-08-12
9	실무자를 위한 통합 안내서	1273	2021-06-14
8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학회용)	555	2021-06-14
7	예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학회용)	237	2021-06-14
6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573	2021-04-22
5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113	2021-04-21
4	바람직한 『창의연구(R&E) 활동』을 위한 권고사항	164	2021-04-19

1 2

총:13건 Page 2/2

No	제목	조회	날짜
3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학회용)	267	2021-04-19
2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대학용)	452	2021-04-19
1	[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	345	2021-04-19

1 2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 042-869-6649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지원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 연구윤리 교육강화
- 현장지원
- 기반조성 등 지원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학술·인문사회사업 > 학술활동 및 연구윤리활동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공지 | Q&A | FAQ

■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 목적
 - 연구윤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계·대학의 연구윤리 확립도모
 - 연구윤리 인식 확산, 연구윤리 교육활동(온·오프라인 교육) 등 지원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 주요 내용
 - 연구윤리 교육강화(온·오프라인)
 - 연구윤리 현장 지원
 - 연구윤리 기반 조성
- 지원 예산(2021년도)
 - 지원비: 총 1,355백만원
- 추진 과제(2021년도)

구분	추진과제
교육강화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시스템 운영
	방문형·접합형 연구윤리 교육(오프라인)
	연구윤리 정보 상담 센터 운영 (연구윤리 정보 제공, 인식 확산, 온라인 상담)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조기 정착 지원 (연구윤리 전문기 피견 및 컨설팅 지원 체계 시범 구축 등)

연구윤리정보포털

-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 및 인식확산을 위한 전문 정보포털
- 연구부정행위 온라인 제보, 연구윤리 온라인 상담 지원

연구윤리 의무교육 (단, 연구재단 지원 과제 한정)

근거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

의무화

-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의무 대상 적용)
- 연구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정 교육운영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

유의사항

- 회원가입 또는 수강신청 시 해당 연구과제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 반드시 입력
- 수강완료 후 수료증에 국가연구자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연구윤리 의무교육 (단, 연구재단 지원 과제 한정)



연구윤리 의무교육 (단, 연구재단 지원 과제 한정)



II. 연구윤리 규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5조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윤리규
정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6조

- 연구윤리 위반행
위의 의미
- 연구윤리 위반행
위의 유형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제10조
연구윤리 교육

제11조
연구 환경의 개선

제12조
연구자의 의무

제13조
연구의 개방성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4조
연구윤리 위반의 제
보와 판정

제15조 제재조치

제16조
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제17조 재심의

Ⅲ. 총칙

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미래사회』에 투고, 심사,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사항, 연구윤리 위반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 준수와 학술지 발간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연구윤리규정 준수 약약서, 논문유사도 검증결과 제출 의무화 2.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회의적 자세 •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의 발견 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 • 연구 및 지적활동에서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미리 공표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논문은 투고 시 특수관계인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사전동의 및 연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고된 논문을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함 2. 논문의 평가 의뢰 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함 3.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 정보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한 심사평가: 개인적 학술적 신념 또는 저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학술지 발간 규정의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2. 연구자의 인격존중: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함 3. 비밀유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함. 논문이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됨 4. 책임윤리: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IV.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이중출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
행위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주요
부정행위
교사·강요

주요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
으로 관련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표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학술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를 포함함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것.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됨
-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 시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사용 가능

부당한 저자표시

논문 작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적절하지 않게 저자가 표시된 경우. 특히 **학위논문의 수정·보완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저자표시를 규제함

- 각주로 이에 대한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참고문헌에 해당 학위논문을 기재하여야 함
- **학위논문 제출자가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되며**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함. 필요시 해당 논문의 작성에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위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과정이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

연구과정에서 연구수행 방법, 연구자료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한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 처럼 학술지의 투고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요청 시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함.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음.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
-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하는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하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발표집 또는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음. 단 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함
-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으나 투고 시 특수관계인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의 참여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행위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주요 부정행위 교사·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

주요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 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한 경우. 단 연구소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함

'사람, 동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으로 관련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정의된 연구부적절행위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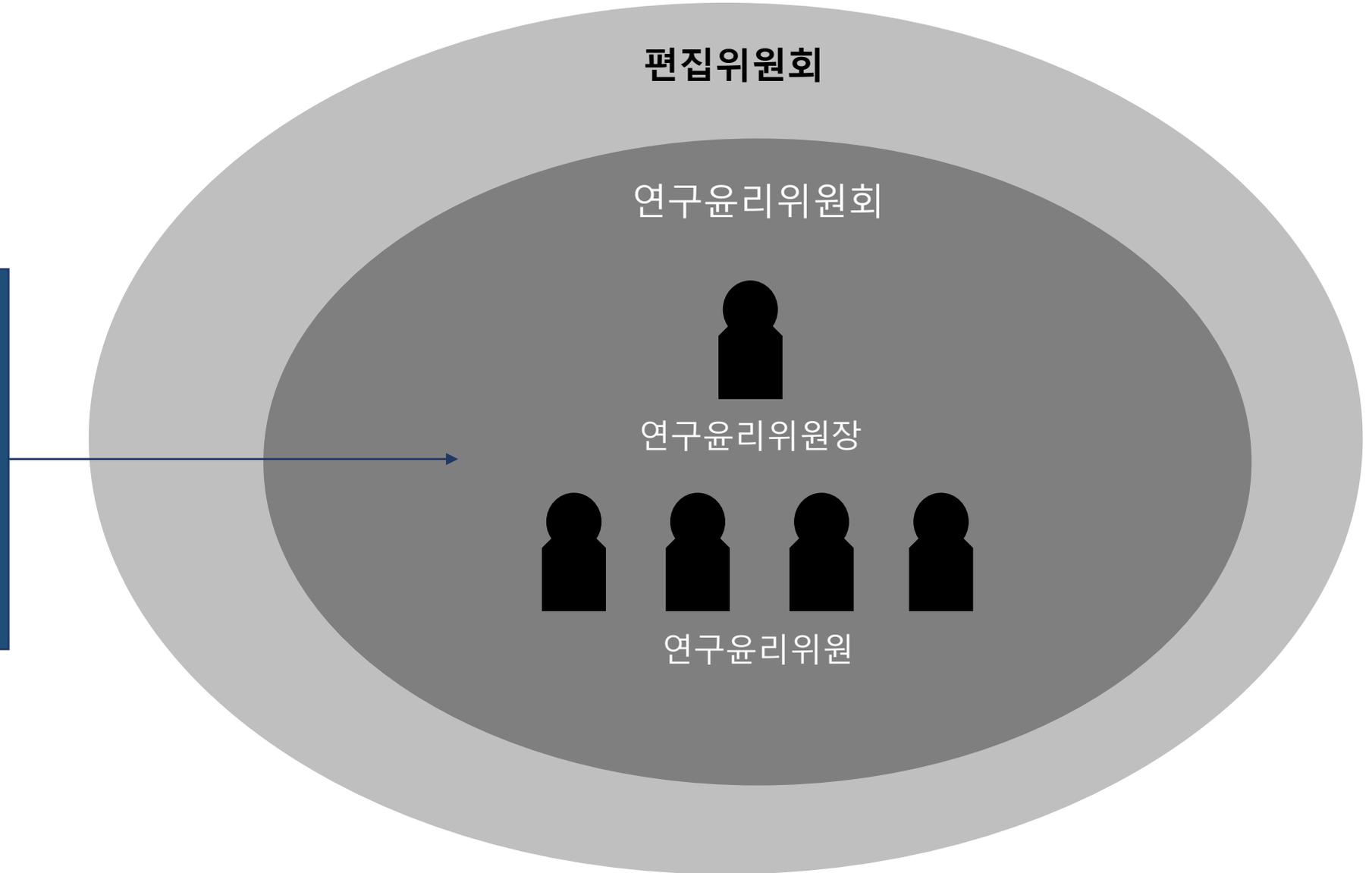
검증체계 운영



V.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연구윤리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편집위원회 내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5인 이내 구성
- 연구윤리위원장 ⇒ 편집위원장이 임명
- 연구윤리위원 ⇒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소집

편집위원장의 요청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함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한

검증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관련 조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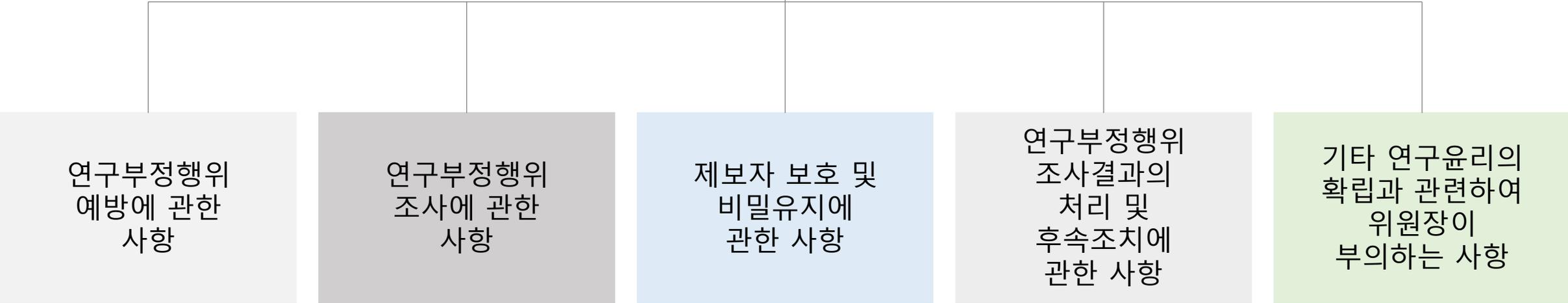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비밀
준수

연구윤리위원은 조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함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역할 및 의무

연구윤리 교육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하여 회원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윤리 교육 자료를 위한 자료 등을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여야 함

연구 환경의 개선

회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함



연구자의 의무

-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및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그 내용이 정직해야 함
-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함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연구의 개방성

-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VI. 연구윤리 위반 제재

연구윤리 위반의 제보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는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구소는 제보
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조치해야함



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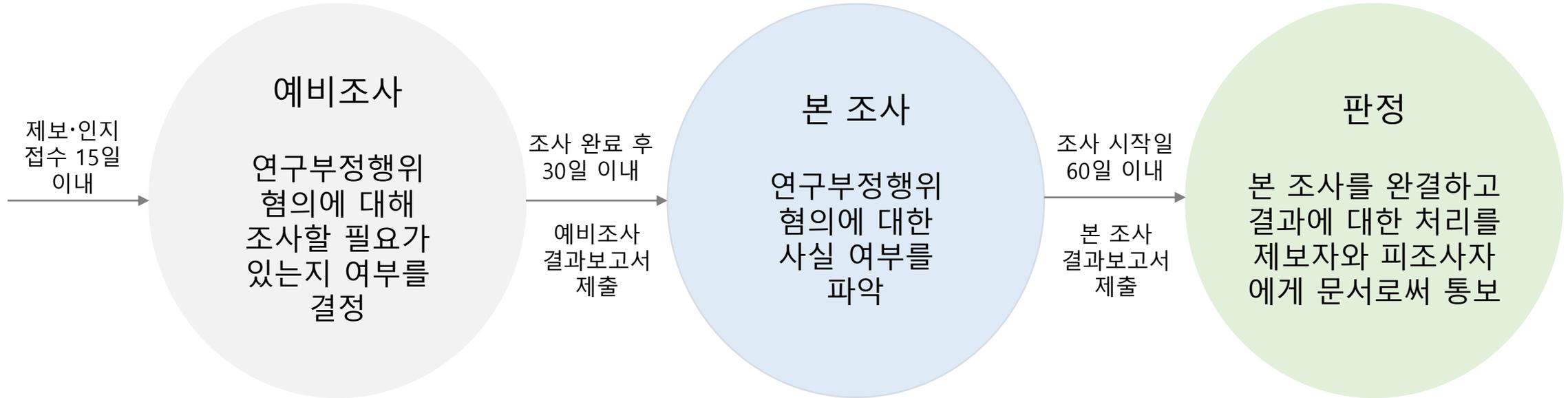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
집위원에 알린 자

피조사자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
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해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연구윤리 위반의 판정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논문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 가능

제재조치

1.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시,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는 무효이며, 해당 저자는 이후 최소 3년 이상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2. 중복투고의 경우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3.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을 삭제한다.
4.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을 통보한다.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추후 한국연구재단의 지시에 따라 학술지 실태점검에 협조한다.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의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소명 기회와 비공개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조치를 하기 전 절차를 고지하면서 제재조치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보자과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2. 투고자는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를 보호하지 않음
3.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투고자의 신원과 심의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음
4. 부정행위 사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음.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음

재심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투고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는 재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